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연간 농어업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고용된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 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농어업 규모		농지 제곱미터, 어선 톤, 양식 헥타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
인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
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농어업인의 구분은 다음의 구분표에 따릅니다. 다만, 농업과 어업(양식업을 포함합니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양식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양식업의 종사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 양식업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 이고(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농어업인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3.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란에는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